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능형주차장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9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9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지능형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의3 신설)	15
3. 과밀억제권역의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의 지능형주차장 설치 우선 검토의무 신설(안 제4조제4항 신설)	19
4. 지능형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안 제19조의25 신설 등)	22
5.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교육의무 등 신설(안 제19조의26 신설 등) ...	24
6. 지능형주차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규정 준용(안 제19조의27 신설 및 안 제29조·제30조)	31
7. 지능형주차장 지원시책 수립·시행(안 제19조의28 신설)	39
8. 보칙 개정(안 제22조의2 등)	41
9. 부칙 규정	44
※ 참고자료	45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221849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4. 22.
3. 회 부 일 : 2026.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능형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능형 주차장치는 기존 수직 순환식 타워와 같은 거대 고정 시설물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상주 운영방식, 공공주택 내 도입 불가 등 지능형 주차장치의 특성과는 무

관한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신기술 도입 및 상용화가 지연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능형 주차장치 및 지능형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 주차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차장 구조·설비, 관리·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연구개발, 사업화,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도시 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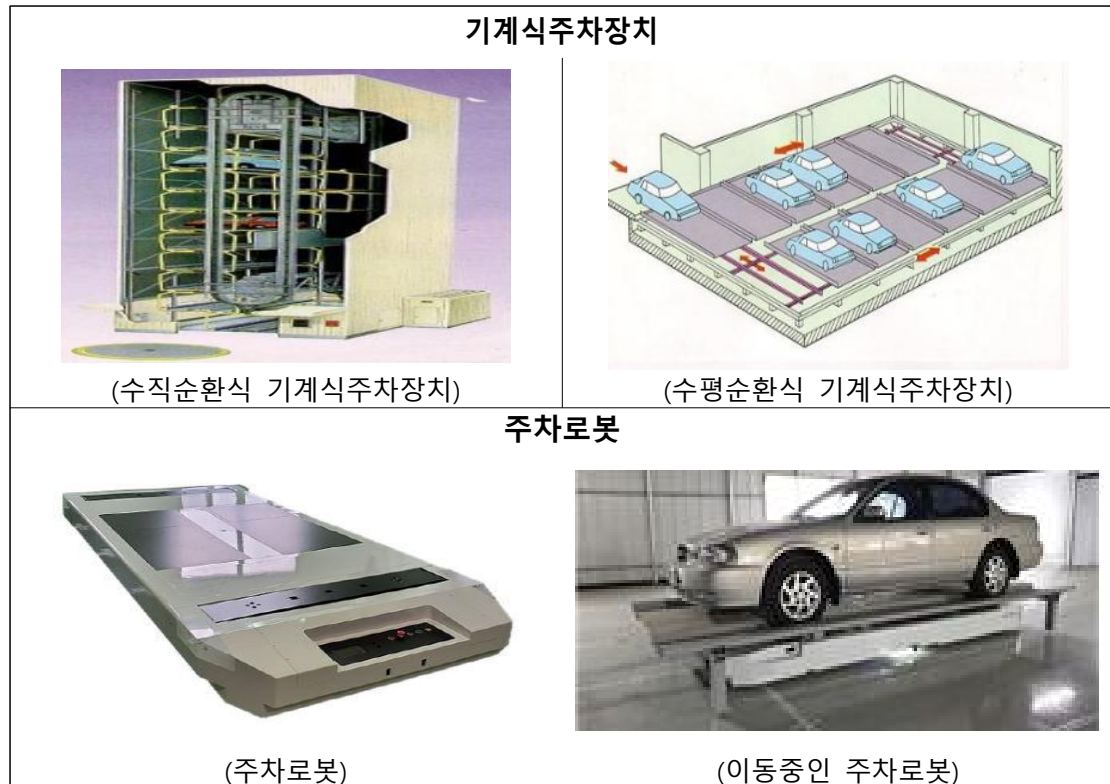
최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지능형 로봇¹⁾이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차방식이 국내외에 등장하고 있음. (참고 1. 참조)

이러한 로봇주차방식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기존 주차장에 비하여 차량 통행 및 회전을 위한 공간, 운전자가 승하차하는 공간 등을 줄일 수 있어 주차공간의 이용 효율 및 건축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로봇주차방식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방식으로, 리프트, 슬라이드 등 고정설비가 차량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송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계식주차방식과는 적용 기술이나 운영방식, 공간활용방식 등이 다름.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 기계식주차장치 및 주차로봇 예시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기계식주차장치’로 정의²⁾하고 있음에 따라 로봇주차방식의 주차장도 기계식주차장(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의 범주에 해당하여,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로봇주차방식의 주차장에도 기존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 및 안전성기준과 공동주택 등에 설치가 제한되는 등의 규제³⁾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2)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3) 다만, 개정안이 발의(2026년 4월)된 후인 2026년 7월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으로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적·산업적 변화를 고려하여 로봇주차방식의 지능형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와 구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법정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지능형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능형주차장치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형주차장치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주차장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능형주차장치의 보급 촉진을 통한 주차난 완화 등의 효과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에서는 현행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서 지능형주차장치를 제외하고, “지능형주차장치”와 “지능형주차장”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있음(안 제2조제2호·제2호의2·제3호의3).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능형주차장의

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허용되었음.(참고 3. 참조)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4조제4항).

셋째, 현행법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조항을 묶어 하나의 장으로 편제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지능형주차장에 관한 별도의 장(안 제5장의3)을 신설하고, 신설된 장에 지능형주차장 관련 4개 조(안 제19조의25부터 제19조의28까지)를 신설하고 있음.

안 제19조의25에서는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안 제5장의3(지능형주차장) 의 조문 구성 >

현 행	개정안(신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5장의3 지능형주차장
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9조의25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12 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 안 제19조의27에서 준용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제19조의15 결격사유 제19조의16 보험 가입 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8 시정명령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 안 제19조의27에서 준용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제19조의26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제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4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 안 제19조의27에서 준용
	제19조의27 지능형주차장에 대한 준용
	제19조의28 지능형주차장 지원시책의 수립 등

안 제19조의26에서는 지능형주차장의 관리인 배치의무, 지능형주차장의 설치자·관리자·관리인 등의 교육의무 및 자체점검의무 등 준수사항과 원격관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안 제19조의27에서는 지능형주차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지능형주차장치 안전도인증제도, 지능형주차장 안전검사제도,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제도, 지능형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제도, 운행중지명령제도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안 제19조의28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주차장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능형주차장치 관련 연구개발 등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넷째, 이상의 주요 개정규정과 연계하여 자료요청, 감독,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 보칙 규정과 새로 도입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지능형주차장치는 자율주행 로봇, 센서, 소프트웨어 및 중앙관제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고정적 기계설비 중심으로 작동되는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치와 기술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짐.

또한, 지능형주차장치에 의한 주차방식은 운전자가 주차구역 내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주차로봇이 차량을 이동시키므로 기존 자주식주차방식 또는 기계식주차방식과 공간구조나 공간활용 면에서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반영하여 지능형주차장치를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치와 구분되는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독자적인 설치기준과 안전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의 장점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법령상 지능형주차장치가 기계식주차장치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하나, 하위 법령에서 이미 다른 기계식주차장치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유형으로 구분되어⁴⁾ 설치기준,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2022년 9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9호) 개정으로 지능형주차장치가 기계식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고,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기준, 통신기준, 성능기준, 사용검사기준, 정기검사기준, 정밀안전검사 기준 등이

4)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 참고 2. 참조

처음으로 마련되었음⁵⁾.

2026년 3월에 개정된 현행 규정에서는 기존 ‘지능형주차장치’가 ‘자동이송주차장치’로 용어가 변경되고, 그 유형이 세분되었으며⁶⁾, 자동이송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완화 또는 개선되었음⁷⁾.

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9호, 2022. 9. 23.,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설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기술변화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주차장의 실증사업이 추진 중이나 주차로봇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부재로 안전도 확보 및 국내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2조 제10호 신설)
- 나.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장치 기준 신설(안 제4조 제16항 신설)
-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로봇과 주제어반과의 통신 연결상태 기준 신설(안 제5조 제11항 신설)
- 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로봇의 바닥면의 종단경사도에 대한 주행 능력 유지 신설(안 제10조 제5항 신설)
- 마.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서 제출서류에 주차로봇의 수신감도 등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 포함 (안 제15조 제1호 사목 신설)
- 바. 규제 일몰규정 신설 (안 제21조 신설)
- 사. 사용검사 기준 개정(별표 1 개정)
 - 지능형주차장치의 사용검사 기준 신설
- 아. 정기검사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 지능형주차장치의 정기검사 기준 신설
- 자. 정밀안전검사 기준 개정(별표 3 개정)
 - 지능형주차장치의 정밀안전검사 기준 신설
- 차. ~ 타. (생략)

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자동이송주차장치** :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린 다음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주차하는 방식(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
- 나. 주차로봇이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을 지지·승강시켜 이동·주차하는 방식(이하 "**타이어리프트형**"이라 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0호, 2026. 3. 31., 일부개정)

개정안이 발의된(2026년 4월 22일) 이후인 2026년 7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일종으로 ‘자동이송주차장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고8),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

< 2026년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구 분	2026. 7. 27. 개정 내용	근거
자동이송주차장치 개념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키는 기계장치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방법설비	CCTV 또는 네트워크카메라 설치·관리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면공지	너비 10m × 길이 11m 이상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방향전환	로봇 자체에 방향전환 기능이 있으면 내부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취급 가능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정류장 특례	진입로가 일방향이면 3m 이상, 양방향이면 6m 이상일 경우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차로 높이	2.3m 이상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출입구	너비 3m 이상(출입문 설치 시 2.4m 이상), 높이 2.3m 이상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 제·개정 이유

- 자동·무인화 기술을 적용한 주차장치가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기준 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한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제·개정 내용

-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위치2중감지장치, 돌출방지장치, 추락방지장치 및 수평보정장치의 불필요한 안전장치 설치의무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입출고시간 기준 개선을 대당 입출고시간으로 개선하며 이에 따른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서 서식 등을 개정

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또는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2026. 7. 27. 개정 내용	근거
주차단위구획 크기	다른 기계식주차장 기준 적용 제외 (자주식주차장 기준 적용)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운반기 크기	2.15m 이상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입출고 통로	너비 50cm 이상, 높이 2.3m 이상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검사서류	현장설치 평면도 제출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설치현황 관리	안전도인증서·검사확인증 등을 첨부한 설치현황서 지자체 제출	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

같은 시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으로 지능형주차장치의 주택 내 설치가 허용되어 종전 기계식주차장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주택 내 설치가 제한되던 규제가 개선되는 등⁹⁾ 지능형주차장 보급에 지장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치를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치와 구분되는 별도의 유형으로 제도화하려는 취지이나, 제도화의 핵심적인 사항인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개정규정을 살펴보면,

설치기준에 관한 안 제19조의25¹⁰⁾에서 지능형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포괄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행 하위 법령에서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다른 실익을 찾기 어렵고,

9) 2026년 7월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으로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허용되었음.(참고 3. 참조)

10) 개정안

제19조의25(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개정규정(안 제19조의26제3항 및 제19조의27¹¹⁾)에서는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다수의 현행 규정들을 일괄하여 폭넓게 준용하고 있어 지능형주차장치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제도화라는 개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지능형주차장에 적용되는 현행 준용규정 >

구 분	개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	비고
안전도 인증 제도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안 제19조의27에서 준용
검사 제도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1 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인증 및 검사 대행기관 지정제도	제19조의12 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제도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제19조의15 결격사유 제19조의16 보험 가입 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8 시정명령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관리인 제도, 자체점검 제도 등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준용	안 제19조의26 제3항에서 준용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안 제19조의27에서 준용

11) 개정안

제19조의26(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③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에 관하여는 제19조의20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제19조의27(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준용)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지능형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지능형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사고 보고 및 사고조사, 지능형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지능형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제19조의21부터 제19조의2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구 분	개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	비고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제도	제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운행중지명령제도	제19조의24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셋째,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지능형주차장치는 아직 개발 및 도입 초기단계로¹²⁾ 지능형주차장치의 장점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하여 완결성을 가진 설치기준 및 안전성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의 제도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이 하위 법령 체계에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음.

라. 국토교통부 의견

개정안은 지능형 주차기술 도입 촉진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 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기술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하지 않아 입법 효과보다 제도 혼선이 우려됨.

특히, 지능형주차장치를 별도 법적 범주로 신설하면서도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 기준을 준용하는 구조로, 입법 체계상 정합성이 충분치 않으며 적용 기준의 중첩 및 해석상 혼선 발생도 예상됨.

12)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2023년부터 국내 최초로 로봇주차장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입·출차 시간 지연 등으로 일반 주차장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률도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인천 부평구 스마트 로봇주차장, 입·출차 관련 시스템 개선”, 기호일보, 2026. 3.20,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771>)

또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능형 주차장치 구조·설비, 관리·운영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인 만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지능형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의3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정의에서 지능형주차장치를 제외하고, “지능형주차장치”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¹³⁾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¹⁴⁾에 따른 지능형 로봇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 정의하며, “지능형주차장”을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설비 (제2호의2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치는 제외한다)-----. 2의2. “지능형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에 의하여 자동

현행	개정안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u><신설></u> 4. ~ 13. (생략)	<u>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u> 3. (현행과 같음) <u>3의3. “지능형주차장”이란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u> 4. ~ 13. (현행과 같음)

지능형주차장치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정형 기계설비를 중심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종래의 기계식주차장치와 달리 자율이동이 가능한 주차로봇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중앙관제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 1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만 허용되는 것과 같이 개정안에서는 지능형주차장치의 설치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만 허용하고 있음.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작동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음.

이에 지능형주차장에 적합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치 및 기계식주차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유형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으로 정의되고,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으로 정의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와 지능형주차장치를 복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느 주차장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경우 법규의 적용 대상 여부도 불명확하여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복합식주차장”과 같은 용어를 신설하고, 복합식주차장 내에서는 기계식주차구역과 지능형주차구역 등 구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이 구역별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센서·제어 기능 등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안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

기술발전에 따라 기계식·지능형 간 경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계식과 지능형으로 주차장치의 법률상 개념을 이원화할 경우 향후 해석상 혼선 및 규제 적용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됨.

3. 과밀억제권역의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의 지능형주차장 설치 우선 검토의무 신설(안 제4조제4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¹⁵⁾¹⁶⁾ 중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지능형주차장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능형주차장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 참고4 . 참조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수급 불균형이 심각하여 주차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지역이고 지능형주차장은 동일한 면적에서 보다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공간효율성이 높으므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장 설치 시 지능형주차장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주차난 완화와 신기술 보급 촉진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검토를 의무화하면서 의무이행 대상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검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수반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강행규정인지, 단지 지능형주차장의 보급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정책적 권고 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만약, 실질적인 강행규정이라면 검토 방식, 검토 결과의 행정청 제출, 지능형주차장 미설치 결정 시 사유 제출, 위반 시 제재규정 등과 같은 실효적인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 권고 규정인 경우에는 그 대상 지역이나 대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음.

한편, 지능형주차장의 효율성·안전성이 기술적·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상용화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민영주차장에 대하여 의무적 규정을 적용하여 지능형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등 공공영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 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설치 시 지능형주차장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 성숙·운영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설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함.

또한, 의무의 이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지능형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안 제19조의25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설치기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능형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안 제19조의25 신설 및 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u>제5장의3 지능형주차장</u> <u>제19조의25(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u> <u>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24조(영업정지 등)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9조의25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u> 2. ~ 5. (현행과 같음)

안 제19조의25 및 제24조제1호의2는 각각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조문임.

개정안이 지능형주차장을 기존의 기계식주차장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도화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설치기준에 관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기준을 위반한 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부합함.

5.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교육의무 등 신설(안 제19조의26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지능형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으로 지능형주차장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인 등의 교육, 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통보, 안내문 부착, 자체점검 등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련 규정인 현행 제19조의20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관리인 배치의무 및 준용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9조의26 및 제29조제2항제11호의4 신설 및 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6(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① 지능형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지능형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지능형주차장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략) 11의2. · 11의3. (생략) <신설> 12. (생략)	<u>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으로 지능형주차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제29조(벌칙) ① (생략) ② ----- ----- -----. 1. ~ 11. (생략) 11의2. · 11의3. (생략) <u>11의4. 제19조의2제1항을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u>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의4. 제1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1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의6. 제19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 6.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② ----- ----- -----. 1. ~ 3. (생략) 4. 제19조의2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4의2. 제19조의2제4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3. 제19조의2제7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의4. 제19조의2제8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5. 제19조의2제8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의6. 제19조의2제9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 6. (생략)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생략)	③ ----- ----- -----. 3. 제19조의20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9조의20제5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안 제19조의26에서는 지능형주차장의 관리인 배치 의무, 관리인 등의 교육 의무, 관리인 선임·변경 통보 의무, 안내문 부착 의무, 자체점검 의무 등 준수사항에 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련 규정인 현행 제19조의 2017) 각 항의 규정을 차용 또는 준용하여 규정하면서, 안 제19조의26제2

17)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무게 등 기

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과 달리 관리인의 원격관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먼저 안 제19조의26제2항과 관련하여, 지능형주차장은 자율주행 로봇과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로봇과 차량의 위치 및 운행상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각 주차장에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는 경우 중앙관제와 자동화라는 기술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안 제19조의26제2항에서 지능형주차장의 원격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지능형주차장의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또한, 동 항에서는 원격관리가 허용되는 ‘안전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여 원격관리의 허용요건과 허용기준을 법정화하고 있는데, 원격관리는 주차장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체제이므로 주차장 자체의 안전성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경우에 허용될 필요가 있고, 원격관리 시에도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상상황에 적절한 대응 등이 가능한 범위에서 원격관리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행 법령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원격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기계식주차장에 편입되어 있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도 지능형주차장의 원격관리가 가능하나 그 요건이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므로 안전성 확보 수단으로서 원격관리의 요건과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원격관리의 요건과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19조의26제3항에서는 지능형주차장의 설치자·관리자·관리인 등의 교육 및 자체점검 등 준수사항에 관하여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기계식주차장과 다른 지능형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계식주차장의 교육내용 및 자체점검 항목 등을 그대로 지능형주차장에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¹⁸⁾ 별도의 항목 신설하여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서는 안 제19조의26제3

18) 예를 들어 지능형주차장 관리인에게는 종래 기계설비의 작동·점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원리, 센서 및 통신시스템의 이상 확인, 중앙관제시스템 장애 대응, 소프트웨어 오류 및 비상정지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현행 제19조의20 각 항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면서, 준용 근거를 ‘제19조의26제3항’이 아니라 ‘제19조의27’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 및 원격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지능형주차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규정 준용(안 제19조의27 신설 및 안 제29조·제30조)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지능형주차장치 안전도인증제도, 지능형주차장의 안전검사제도, 지능형주차장 보수업 등록제도, 지능형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제도, 운행중지명령제도 등에 관하여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제19조의21부터 제19조의24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9조의27 신설),

준용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과태료 규정에서도 지능형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과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안 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 있음(안 제29조·제3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7(지능형주차장치에 대한 준용) 지능형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지능형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지능형주차장치 보수업, 지능형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지능형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지능형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6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제19조의21부터 제19조의2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지능형주차장관리자등”으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지능형주차장치”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으로 각각 본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u>기계식주차장</u> 을 사용에 제공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u>기계식주차장</u> 및 <u>지능형주차장</u> 을-----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3. ----- --제19조의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u>기계식주차장</u>	4. 제19조의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u>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u>	-----기계식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치를-----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및 지능형주차장치의-----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6. -----제19조의9제2항 각 호(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의23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을-----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을-----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9. 제19조의12(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의23제4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의-----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	10. 제19조의14제1항(제19조의27에

현행	개정안
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의2. (생략)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2.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11. ----- --- 제19조의1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제19조의23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기 계식주차장 또는 지능형주차장을 ----- 12.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9조의16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9조의22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19조의22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② -----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9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의2. 제19조의14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9조의17(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생략)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의2. 제19조의24제3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 및 제19조의27에서 준용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u>기계식 주차장의</u>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를 포함한다)----- ----- <u>기계식주차장 또는 지능형 주차장의</u> ----- -----
3. · 4. (생략)	3. · 4. (생략)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지능형주차장의 제도화에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임.

현행법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도인증, 안전검사, 유지보수, 사고 보고·조사, 정밀안전검사, 운행중지 등 단계별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능형주차장에 대한 각각의 안전관리제도를 모두 새롭게 신설하기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입법경제 측면 및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지능형주차장의 안전관리상 위험요인은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차이점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제도의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기준까지 현행 기계식주차장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른 준용규정 중 하나인 제19조의9제2항제3호

가목19)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수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요구동부·운반기·철골구조 등의 변경이 수시검사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능형주차장에서는 로봇의 주요 부품뿐만 아니라 로봇 교체, 주행알고리즘이나 통신방식의 변경 등이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계식주차장의 수검요건을 그대로 지능형주차장에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지능형주차장에 준용하기보다 지능형주차장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기준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준용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유의 안전관리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지능형 주차장치에 대해 안전도 인증, 검사, 보수업 등 기존 기계식 주

19)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③ (생략)

차장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기술적 구조 및 작동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적정성에 의문임.

기계식 기준 일괄 적용에 따른 문제 제기가 입법 배경이나, 결국 검사 등 기술 부분은 다시 기계식 기준을 준용하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음.

7. 지능형주차장 지원시책 수립·시행(안 제19조의28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주차장의 보급을 통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주차장치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지능형주차장의 설치·운영사업 및 그 밖에 지능형주차장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기관·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8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8(지능형주차장 지원 시책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주차장의 보급을 통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지능형주차장치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주차장치에 관한 연구개발

현행	개정안
	<u>사업</u> 2. <u>지능형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사업</u> 3. <u>그 밖에 지능형주차장의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주차효율 및 건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주차장은 아직 기술개발과 실증·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초기 시장형성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기술표준의 확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

8. 보칙 개정(안 제22조의2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 안전관리제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자료요청, 청문, 보고·검사, 수수료,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의 보칙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안 제22조의2·제24조의3 및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등의 제정, <u>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u> 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 <u>기계식주차장관리자</u> 등에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 ----- ----- <u>기계식주차장 및 지능형주차장의</u> ----- ----- ----- ----- ----- <u>기계식주차장관리자·지능형주차장관리자</u> 등에게-----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청문) ----- ----- ----- -----.
1. <u>제19조의8제1항</u> 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1. <u>제19조의8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현행	개정안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2. 제19조의19(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 ----- ----- -----제19조의12(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1. 제19조의12제1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제19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 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 3. 제19조의23제4항(제19조의27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능형주차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별도의 설치기준,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요청, 안전도인증 취소 등에 대한 청문, 관계 행정기관의 보고·검사 및 검사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을 지능형주차장에도 적용하는 것은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임.

9. 부칙 규정

가. 검토의견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지능형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에 편입되어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되어 지능형주차장치를 기계식주차장치의 정의에서 제외하게 되면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치로 안전도인증·사용검사·정기검사 등을 받은 지능형주차장치(현행법상 “자동이송주차장치”)의 법적 지위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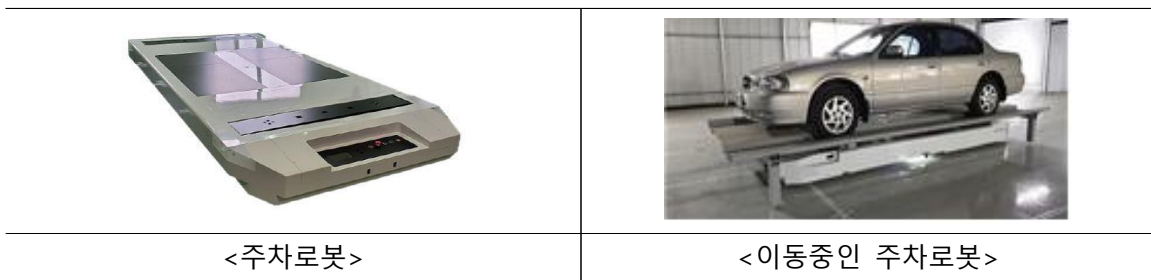
따라서, 부칙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받은 안전도인증, 사용검사·정기검사, 보수업 등록, 관리인 교육 및 신고·처분 등을 개정법에 따른 해당 행위로 보도록 하는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 마로로봇테크의 주차로봇(NARCA)

- (방식) 승하차장에 설치된 운반기 위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한 후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QR코드**를 따라 이동·주차하는 방식
- (설치현황) 인천 부평에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장 운영 중('23.11~)



□ HL로보틱스의 주차로봇(PARKY)

- (방식) 로봇이 차량 하부로 들어가 차량 바퀴를 들어 올린 후 자율적으로 이동(**Lidar**센서 활용)하여 주차하는 방식
- (설치현황) 안전도인증 완료('25.1.9. 로봇2기 66대형) → 상용화 준비 중



□ 현대위아의 주차로봇

- (방식) 차량 하부로 진입하는 방식(bottom under-lift method)을 채택
 - 로봇(2대)은 높이 약 11cm로 설계되어 차량 밑으로 들어간 뒤, 앞바퀴와 뒷바퀴를 각각 들어 올려 이동(**QR코드** 활용)하는 방식
 - 로봇은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하여 차량 바퀴의 크기·거리를 인식하며 차량 하부 진입. 전후좌우 자유로운 이동. 제자리 360도 회전 가능

	
< 주차로봇 >	<이동중인 주차로봇>

○ **(설치현황)** 팩토리얼 성수에 설치*하여 테스트 진행('24.6~'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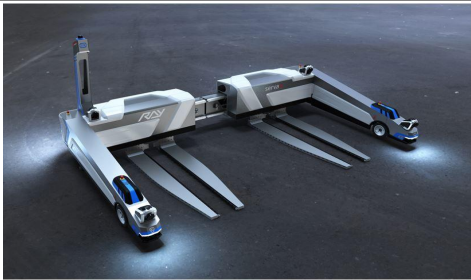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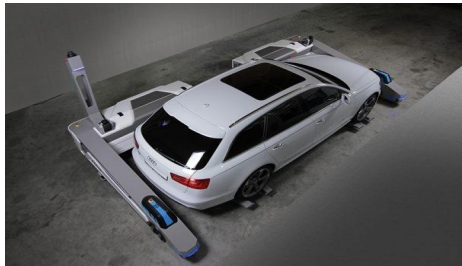
* 이지스자산운용 소유 로봇친화형 빌딩(지하4층). (주차면수) 6면, (주차로봇) 2대

□ 獨, 세르바 트랜스포트 시스템(Serva Transport Systems)의 주차로봇(Ray)

○ **(방식)** 차량을 옆에서 들어 올리는 평행주차 방식(side-lift parallel parking)을 사용. 지게차(forklift)와 유사한 메커니즘

- 차량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360도 회전 가능한 바퀴를 활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유연하게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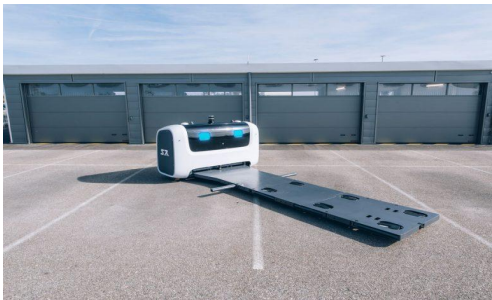
○ **(설치현황)** 뒤셀도르프 공항, 물류창고 등

	
<주차로봇>	<이동중인 주차로봇>

□ 佛, Stanley Robotics의 주차로봇(Stan)

○ **(방식)** 차량 하부로 진입하여 차량을 픽업·이동하여 주차하는 방식

○ **(설치현황)** 리옹공항

	
<주차로봇>	<이동중인 주차로봇>

자료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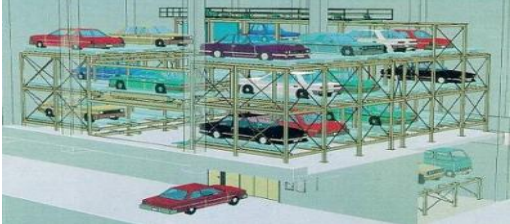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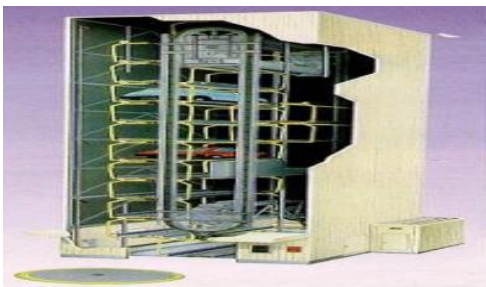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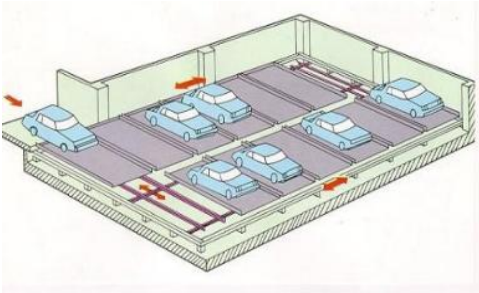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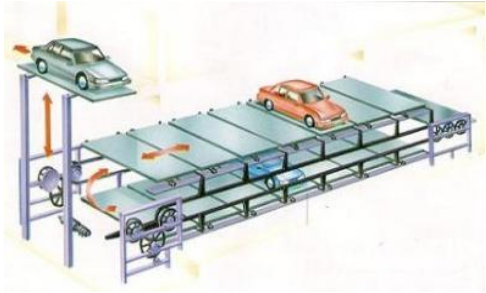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0호)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수직 및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 :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직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하 "리프트"라 한다)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이송한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평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하 "대차"라 한다)와 리프트를 겸하는 이송설비를 승강과 동시에 주행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수평이송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리프트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이송하고 대차를 주행하여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평이송 후 주차구획으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자동입출고주차장치** :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이하 "오토발렛 주차장치"라 한다)를 갖춘 주차장치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형식으로 설계된 주차장치
10. **자동이송주차장치** :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린 다음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주차하는 방식(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
 - 나. 주차로봇이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을 지지·승강시켜 이동·주차하는 방식(이하 "타이어리프트형"이라 한다)
11.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주차장치 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사진 :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승강식 기계식주차장치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	평면왕복식 기계식주차장치
	
승강기 슬라이드식 기계식주차장치	수직순환식 기계식주차장치
	
수평순환식 기계식주차장치	평면왕복식 기계식주차장치
	
자동입출고주차장치(오토발렛)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3

주택 내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근거 마련('26년 7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26. 7. 29.)

-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 설치 근거 마련

연 혁 법 령 (국토교통부령 제1559호, 2026. 1. 30.)	현 행 법 령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 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 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 물로 건축하는 경우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 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 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 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 동이송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 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 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 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 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용조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또는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각 목 생략)

참고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향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 · 당목리 ·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 · 미장리 · 진촌리 · 기솔리 · 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